

2014년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

사례 1 다수 계좌를 이용한 대형 시세조종 사례

가. 사건의 개요

- 투자자문사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 고객과 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수백개의 일임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함
- ☞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: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총괄팀장(02-3145-5570)

나. 조사결과

□ 시세조종 금지 위반

- OO투자자문(주) 주식운용본부장 甲은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 재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편입주식의 인위적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률 제고를 통해 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

‘12.6월~’13.1월 기간 중 A사 등 9개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의 일임계좌(종목별로 최대 6백여개)와 대규모 자금을 이용하여 통정·가장 매매,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음(부당이득 : 200억원)

※ 총 50여만회에 걸쳐 1억3천여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

【사건 개요도】



다. 조치내용

- 고 발 : OO투자자문(주) 및 甲[OO투자자문(주) 주식운용본부장]
-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등 : OO투자자문(주)

사례 2 허위공시 등 여러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복합 불공정거래

가. 사건의 개요

- 상장법인 B사의 실질사주 甲 및 대표이사 乙이 허위의 해외 계열사 매각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,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함

☞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: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기획팀장 ☎ 02-3145-5663

나. 조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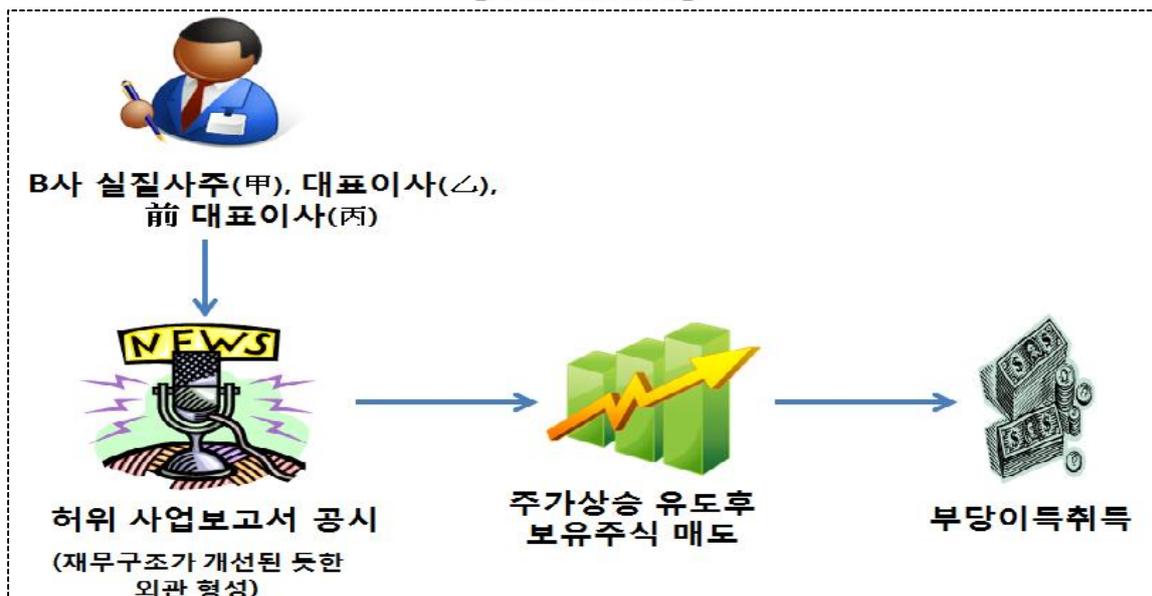
□ 부정거래 위반

- 상장법인 B사의 실질사주 甲 및 대표이사 乙은 과거 경영진의 해외 계열사 주요자산 횡령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횡령사실이 없는 것처럼 동 계열사를 매각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·공시하여 마치 동 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,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음

□ 상장법인 등의 신고·공시 의무 위반

- B사의 대표이사 乙 및 前 대표이사 丙은 상기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·제출한 혐의가 있음

【사건 개요도】



다. 조치내용 : 고 발(甲, 乙, 丙)

사례 3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

가. 사건의 개요

- 비상장법인 C사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통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청약권을 권유하는 등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함

☞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: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3팀장(☎ 02-3145-5552)

나. 조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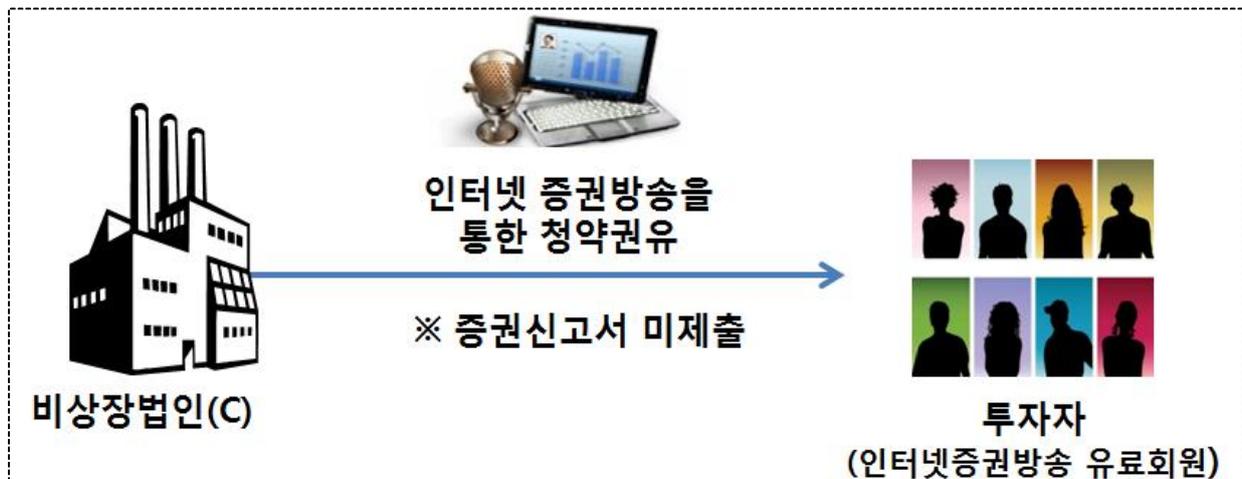
□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법인C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'13.7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통해 동 사이트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주식에 대한 청약권을 권유하는 등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

청약권유 대상 투자자수가 50명 이상이고 주식의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임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※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총 1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청약권을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(「자본시장법」 제119조, 동 시행령 제11조 제①항 및 제120조 제①항)

【사건 개요도】



다. 조치내용

- 과 징 금(45,000,000원) : C사 [비상장법인]

사례 4 알고리즘을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

가. 사건의 개요

- 美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, 알고리즘이라는 신종매매 기법을 이용하여 시세조종함
- ☞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: 특별조사국 파생상품조사팀장(02-3145-5108)

나. 조사결과

□ 시세조종 금지 위반

- 계량적 분석에 의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美 소재 D사 소속의 트레이더인 甲, 乙, 丙, 丁은 본인의 매매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

'12.1월 ~ '12.12월 기간 중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피200 야간선물 시장에 진입,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코스피 200 야간선물 4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,

높은 시장지배력(약 35% 내외)을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며 일중 수십에서 수백차례 본인의 포지션을 유리하게 구축 및 청산하면서 가장 매매,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하여 약 14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

【사건 개요도】



다. 조치내용

- 고 발 : 甲, 乙, 丙, 丁[이상 D사 소속 트레이더], D사

사례 5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상승시킨 시세조종 사례

가. 사건의 개요

- 상장전 청약을 통해 확보한 유상증자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
- ☞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: 특별조사국 특별조사5팀장(☎02-3145-5104)

나. 조사결과

□ 시세조종 금지 위반

- 전업투자자 甲 등은 신규 상장종목의 경우 신규 상장일의 08:00 ~ 09:00 사이에 매수·매도 호가를 접수하여 공모가격의 최고 200%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,

E사 주식의 신규 상장일에 공모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뒤, 공모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에 매수세가 형성되자,

본인들이 낸 대량매수주문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약으로 확보한 보유주식을 전량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음

※ 「자본시장법」 시행 이후 신규상장 주식의 기준가격을 시세조종하여 적발된 최초의 사례임

【사건 개요도】



다. 조치내용 : 고 발(전업투자자 甲, 乙, 丙, 丁, 戊)

사례 6 ELS 기초자산 시세조종

가. 사건의 개요

- ELS 헤지를 담당하는 증권사 트레이더는 기초자산 주가 하락(ELS 수익확정 방해)을 위한 시세조종을 하였고, ELS* 투자자는 기초자산 주가 상승(ELS 수익확정 도모)을 위한 시세조종을 함

* ELS 규모는 210억원이며 전업투자자인 己가 설계에 참여하여 단독으로 투자함

☞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: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기획팀장(02-3145-566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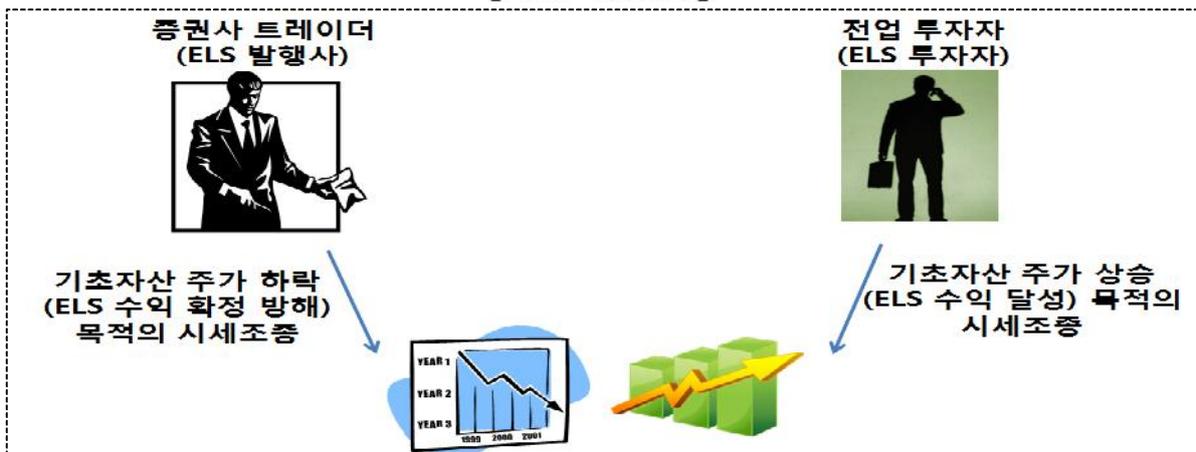
나. 조사결과

□ 시세조종 금지 위반

- 국내증권사 파생상품운용팀 과장 甲 및 외국증권사 한국시장 담당자 乙, 丙, 丁, 戊는 F(주)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OO 증권 ELS의 헤지운용을 담당한 자로, 동 ELS의 만기시 주가를 하락시켜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음
- 전업투자자인 己는 자신이 투자한 ELS중 2개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(기초자산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자) 기초자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,

'10. 8.13. ~ 8.26. 기간 중 F(주)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음

【사건 개요도】



다. 조치내용

□ 수사기관통보 : 甲, 乙, 丙, 丁, 戊, 己 등

사례 7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

가. 사건의 개요

- 상장회사 G사 재무팀장 및 IR(홍보)팀장은 대규모 유상증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다음, 각각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및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등에게 정보를 전달, 주식매매에 이용되도록 하여 손실을 회피함
- ☞ 세부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 : 특별조사국 테마기획조사팀장(☎02-3145-515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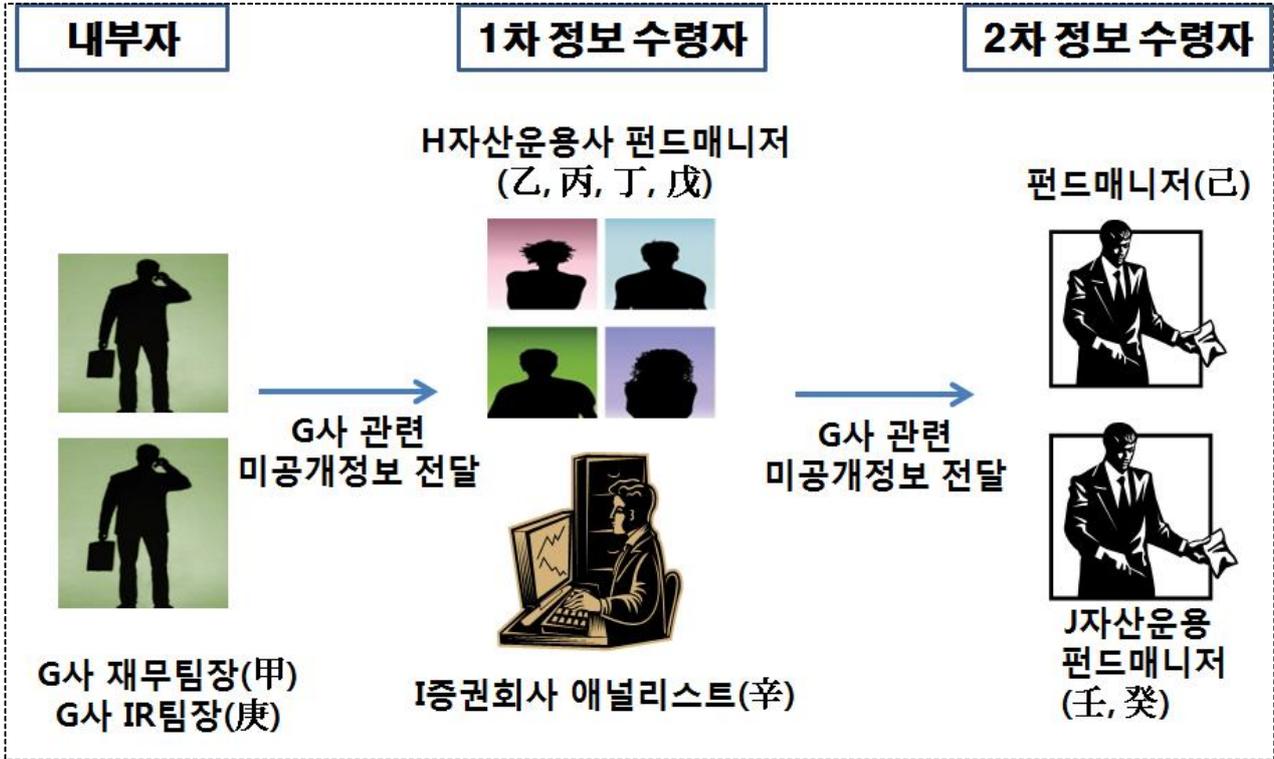
나. 조사결과

□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

- 상장법인 G사의 재무팀장 甲은 동사의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H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 펀드매니저 乙에게 동 정보를 전달,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고
 - 乙은 동 정보를 같은 법인 소속 펀드매니저 丙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, 乙과 丙은 다시 같은 소속 펀드매니저 丁 및 戊와 동 정보를 공유한 후,
 - 丁과 戊(무)는 E자산운용사 운용펀드내 보유중이던 G사 주식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매도하였고,
 - 乙과 丙은 동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E자산운용사 前 동료인 己에게 전달하여 G사 주식을 매도하여 총 8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
- 상장법인 G사의 IR(홍보)팀장 庚(경)은 동사의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I증권회사 소속 애널리스트 辛(신)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고

- I증권회사 소속 애널리스트 辛(신)은 庚(경)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J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壬(임) 및 癸(계)에게 전달, 주식매매에 이용되도록 하여 총 8.3 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

【사건 개요도】



다. 조치내용

- 고 발 : 甲, 庚[G사 직원]
 乙, 丙, 丁[H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],
 辛[I증권회사 애널리스트]
 G [코스닥상장법인], H [자산운용사], I [증권회사]
- 수사기관통보 : 戊[H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]